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(신입) 공개채용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9. 27.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채용 분야·인원 및 주요업무

직군	직급	분야	인원	주요업무
계			37	
행정	6급	건축	4	◦ 주택건설 사업 및 삼다수 공장 시설 관리 등
	7급갑	보안관리	1	◦ 전사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리 및 가이드라인 수립 ◦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운영 ◦ ISMS-P 인증심사 준비 및 대응
생산	7급갑	환경관리	2	◦ 환경관리(폐기물 등) 업무 전반
		품질관리	4	◦ 공장 제품 품질 및 공정관리
	7급을	제품생산	16	◦ 제품생산 현장 근무
특수직	경비직	경비	2	◦ 삼다수(감귤) 공장 시설물 보안관리 등
	미화직	미화	8	◦ 삼다수(감귤) 공장 내·외부 환경 정비

2. 자격요건

○ 전 분야 공통 요건

-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- 제주특별자치도민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
 -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 -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(예정)자
-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분 (인성 / 창조성 / 전문성 / Globality)
-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6급인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군복무중인 자는 임용예정일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

○ 추가 자격요건 <다음 중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>

직군	직급	분야	자격요건(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)
행정	6급	건축	◦ 건축(건축, 실내건축) 관련 기사 이상 소지자
	7급갑	보안관리	◦ 컴퓨터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 졸업(예정)자 * 우대사항 - CPPG, 정보보안기사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자격 보유자 - 개인정보보호 업무 실무 경험 보유자
생산	7급갑	환경관리	◦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
		품질관리	◦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(별첨 자료) 참조 ※ 먹는샘물 및 음료제품 이화학 및 미생물 검사 등 실험을 위하여 관련 분야 학위 또는 자격 소지 필요
	7급을	제품생산	◦ 추가 자격 요건 없음
특수직	경비직	경비	◦ 추가 자격 요건 없음
	미화직	미화	◦ 추가 자격 요건 없음

※ 추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격요건 확인 시 부적격 처리 됨

3. 가점 및 문제 출제 수준

【가점】 (※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자에 한함)

구분	대상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)	가점
공통	-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	전형단계별 만점의 5~10%
	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내지 제2호에 의한 자 - 다문화 가정 / 북한이탈주민	적성검사에 한해 만점의 5% (6급인 경우 직무수행능력test 총점에 대한 만점의 5%)
생산직군	- 제품생산 관련 기사 자격증 (별첨 참조)	적성검사에 한해 만점의 3% (6급인 경우 직무수행능력test 총점에 대한 만점의 3%)

※ 모든 가점은 만점의 60% 이상 득점 시 반영하되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40%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

(단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인 경우 채용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가점 미부여)

※ 가점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(중복 적용 불가) 단,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가 제품생산 관련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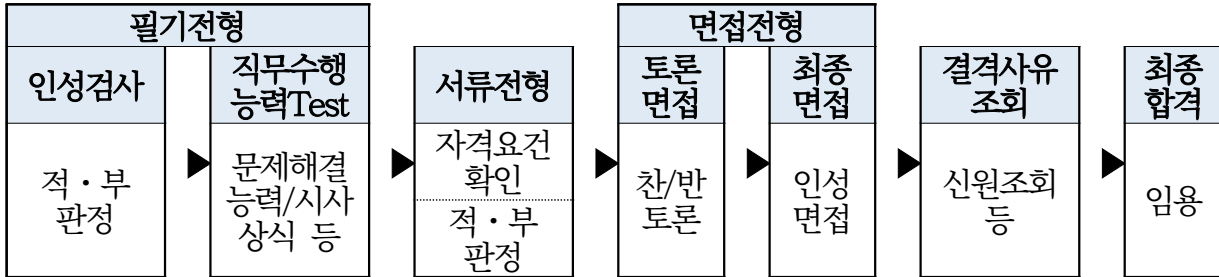
【문제출제수준】

◦ 6급: 대졸 졸업 수준, ◦ 7급갑: 초대졸 졸업 수준 ◦ 7급을: 고등학교 졸업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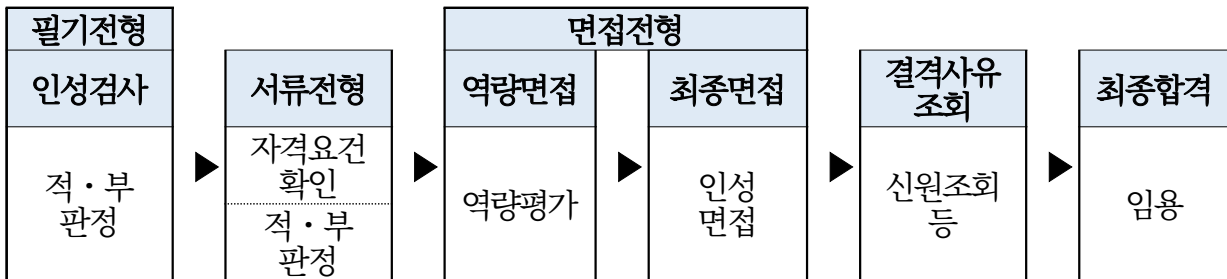
4. 전형절차 <※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>

□ 전형진행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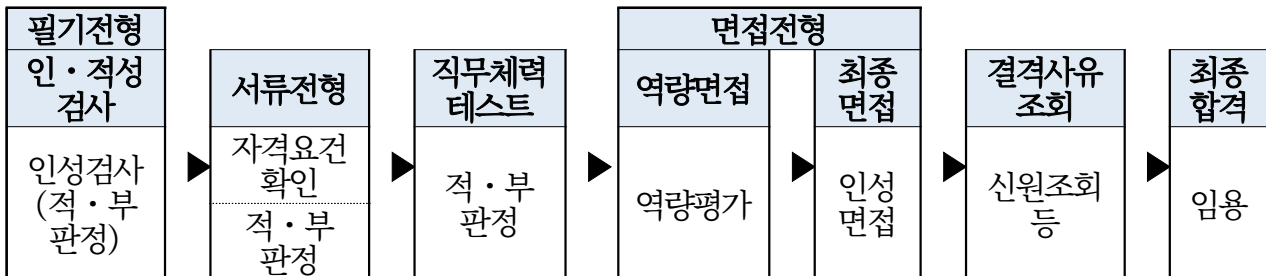
○ 6급, 7급갑(행정)



○ 특수(경비, 미화)직



○ 생산직군



□ 전형별 배수 선발 기준

채용예정 인원	합격배수				
	인성검사	적성검사/ 직무수행능력Test	서류전형	토론/역량 면접	최종면접
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	적격자 전원	3배수이내	적격자 전원	2배수이내	1배수
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	적격자 전원	2배수이내	적격자 전원	1.5배수이내	1배수

※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, 임용등록포기 및 퇴직자 결원 충원을 위하여 최종면접 결과 7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운영

□ 전형별 합격자 선정 기준

◦ 인성검사: 적·부 판정

- 판정기준: 성격유형 및 부적응위험도 모두 적격인 자

성격 유형		부적응 위험도	
A 등급	적격	양호	적격
B 등급			
C 등급			
M 등급			
X 등급			
D 등급	부적격	위험	부적격
R 등급			
E 등급			

◦ 적성검사 (6급인 경우 직무수행능력Test)

- 합격기준: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
- 검사항목: 언어영역, 수리영역, 추리영역, 공간지각능력
 - * 직무수행능력Test: 적성검사 항목 + 시사상식, 문제해결능력

◦ 서류전형(자격요건 확인): 적·부 판정

- 판정기준: 지원분야 자격 적격인 자

◦ 직무체력테스트: 적·부 판정

- 판정기준: 총 5종목 중 3종목 이상 1점 획득 시 부적격 처리
- 측정항목: 악령, 배근력,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, 윗몸 일으키기, 10m 왕복 달리기

◦ 토론면접

-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
- 평가기준: 논리적 사고, 설득력, 적극성, 배려적 의사소통

◦ 역량면접

- 전형별 합격배수 기준에 따라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
- 평가기준: 적합성(조직, 직무, 동기), 신(身), 언(言), 서(書), 판(判)

5. 최종합격자 선정

○ 최종 면접전형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- 평가기준: 공사인으로서의 사고와 자세, 청렴도 및 신뢰도, 책임감 및 적극성, 협업성 및 희생정신, 용모·예의·품행 등

○ 최종 면접전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

- ①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 순
- ② 토론 / 역량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

6. 공고 및 원서접수

○ 공고기간: 2019. 9. 27. ~ 10. 17.

○ 접수기간: 2019. 10. 11. ~ 10. 17. 18시까지

○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
-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접수

※ 공고 및 원서접수 등 세부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「2019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 통합시행 계획」에 따름

7. 접수서류

○ 서류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

○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

◦ 전형별 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	비고
제주 도민	병역(남자) 본인 제주도 거주	◦ 주민등록초본 1부 {주소이전 이력 및 병역사항(남자) 포함}	전원
	부모 중 1인 제주도 거주	◦ 주민등록초본 1부 (제주도 거주 부모 중 1인) ◦ 가족관계증명서 1부.	해당자 (해당되는 사항의 서류 제출)
	제주도내 학교 졸업(예정)	◦ 제주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 *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	
응시자격 관련		◦ 응시자격 증명 서류 - 행정6급(건축) : 건축(건축, 실내건축)기사 이상 자격증 - 행정6급(보안관리) : 졸업(졸업예정) 증명서 - 생산7급갑(환경관리) :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자격 - 생산7급갑(품질관리) : 졸업(졸업예정)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	

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까지 취득분에 한함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, 서류 제출 시 반드시
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

8. 기타 유의사항

-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.
- 지원서 기재 착오·누락, 첨부파일 등록 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모집기간 내 1개의 분야만 지원 가능
- 생산직군 품질관리 및 제품생산 분야인 경우 4조 교대제 운영에 따른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(예, A조 : 09 ~ 18시, B조 : 15 ~ 24시, C조 : 24 ~ 09시, D조 : 휴무)
-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,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.
- 지원자 전원에게 대하여 인·적성검사 {6급인 경우 인성검사+ 직무수행능력 Test}를 실시하되,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인·적성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-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수습 후 발령 시 분야 및 직군 변경 가능
- 수습임용 후 6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하며, 수습기간 내 공사에서 지정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, 직무수행 능력 등 평가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생산직군 품질관리 및 제품생산 분야인 경우 식품위생법 제40조, 먹는물 관리법 제29조 등에 의거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근무 불가능한 질병

- 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(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), 파라티푸스,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, 소화기계통 전염병, A형 간염, 살모넬라, 쉬겔라, E형 간염

- 최종합격자가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, 임용등록포기 및 퇴직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
-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“채용문의”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(☎ 064-780-3514)으로 문의

※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9. 전형일정

구분	일정	비고
공고	9. 27.(금) ~ 10. 17.(목)	공고 20일 이상
접수기간	10. 11.(금) ~ 10. 17.(목)	
인·적성검사 (직무수행능력Test 병행)	10. 26.(토)	
인·적성검사 발표	11. 6.(수) 예정	
서류전형(자격요건 확인)	11. 13.(수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11. 15.(금) 예정	
직무체력테스트	11. 17.(일) 예정	
토론/역량면접	11. 20.(수) ~ 11.26.(화) 예정	
토론/역량면접 결과발표		
최종면접	11. 29.(금) 예정	
합격예비자 발표	12. 2.(월) 예정	
임용 등록	12. 3.(화) ~ 12. 11.(수)	
결격사유 조회	12. 12.(목) ~ 12. 27.(금)	
임용	12. 30. 예정	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으로, 응시자 및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매 전형 일정 공고 시 확정·게시함

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의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,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